

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

※※뒤쪽의 경우·처리기관 확인사항,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----

보고자	① 상호	대표자
	② 영업소(사무실) 소재지	③ 전화번호
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/외국인등록번호)	등록번호

변 경 내 용				
변경구분	변경연월일	변경 전 사항	변경 후 사항	변경 사유
자본금(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)				
임원				
부동산개발 전문인력				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구 비 서 류

자본금 (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)을 변경하는 경우	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,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	
임원을 변경하는 경우	보고자 (대표자)	1. 재외국민등록부 등본(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 2.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(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), 그 밖의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나 공증인(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),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 를 발급한 서류
	경유· 처리기관 확인사항	1.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여권 정보(신청인이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 ※ 제1호(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)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(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)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.

(뒤쪽)

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 조제2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)	보고자 (대표자)	1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.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·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.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
	경유· 처리기관 확인사항	1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※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·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(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)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·처리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·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,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보고자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①~③ : 보고자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, 영업소재지,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.

